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7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2년 7월 12일
-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2년 7월 13일
- 라. 상정일자: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의결(2022.7.22.)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과장 유승복)

### 제안이유

민선 8기 출범으로 효율적인 정책 보좌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일반직과 별정직(비서)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3조 관련 별표 3)

- 일반직 계: 1,738명 ⇒ 1,737명 (감 1)
  - 6급 이하: 1,653명 ⇒ 1,652명 (감 1)
- 별정직 계: 4명 ⇒ 5명 (증 1)
  - 6급 상당 이하: 1명 (증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법」 제2조
- 2) 「지방자치법」 제125조
-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2. 7. 4. ~ 2022. 7. 7.)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사전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최광호)

가. 개정 취지

- 민선 제8기 구청장 취임과 관련하여, 원활한 공약사업 이행 및 안정적인 정책운영 보좌를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3조 관련 별표3에서 정원 총계는 1,743명으로 변동 없음
  - 일반직 계를 1,738명에서 1,737명으로 1명 감원
  - 6급 이하 1,653명을 1,652명으로 1명 감원

- 별정직 계를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원
  - 6급 상당 이하 3명을 4명으로 1명 증원

##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민선8기 구청장 역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안정적인 보좌를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비서)의 정원을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안 제3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에서 일반직 6급 이하 총수(1명 감원)와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총수(1명 증원)를 조정하여, 정원 총계는 1,743명으로 변동 없음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같은 규정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행정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안정적인 조직 구축을 도모하고, 민선8기 구청장의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 6. 토론요지: 생략

##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강서구의회 의장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안 제3조 관련 [별표 3]에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함

### 나. 수정내용

- 안 제3조 관련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계 “1,738명” 을 “1,736명” 으로 하고,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1,653명” 을 “1,651명” 으로 하며,  
별정직 계 “4명” 을 “6명” 으로 하고,  
별정직 6급상당 이하 소계 “3명” 을 “5명” 으로 한다.  
(붙임 수정대비표 참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b>총 계</b>	1,743					<b>총 계</b>	<u>1,743</u>					<b>총 계</b>	<u>1,743</u>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정무직 계	1				
구청장	1	1				구청장	1	1				구청장	1	1			
<b>일반직 계</b>	<b>1,738</b>					<b>일반직 계</b>	<u>1,737</u>					<b>일반직 계</b>	<u>1,736</u>				
2급	1	1				2급	1	1				2급	1	1			
4급	8	6	1	1		4급	8	6	1	1		4급	8	6	1	1	
5급	75	39	3	13	20	5급	75	39	3	13	20	5급	75	39	3	13	20
6급 이하 소계	1,653					6급 이하 소계	<u>1,652</u>					6급 이하 소계	<u>1,651</u>				
전문경력관 소계	1					전문경력관 소계	1					전문경력관 소계	1				
<b>별정직 계</b>	<b>4</b>					<b>별정직 계</b>	<u>5</u>					<b>별정직 계</b>	<u>6</u>				
5급상당	1	1				5급상당	1	1				5급상당	1	1			
6급상당 이하 소계	3					6급상당 이하 소계	<u>4</u>					6급상당 이하 소계	<u>5</u>				
비고 (생략)						비고 (현행과 같음)						비고 (현행과 같음)					

##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 5. 23., 2012. 12. 11.> [전문개정 2008. 12. 31.]

## □ 지방자치법

-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

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 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